

연안유조선 출항전 안전점검에 대한 의견

1. 항만청의 연안 유조선안전관리방안중 회주관련 내용

- (1)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회주(정유사)책임
 - 당해선박의 출항전 선박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소정의 자격자가 점검
 - 안전관리자의 자격 : 5,000G/T이상 유조선에서 1항사 또는 1기사로 1년 이상 근무자
 - 점검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지방해운항만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점검결과 결함이 있는 선박은 출항금지
 - 회주에 대해 안전점검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항만시설 이용 제한 등의 행정제재
- (2) 출항전 안전점검관련 회주의 책임 점검사항
 - 법정 승선인원의 승선여부
 - 선체/선원/P & I보험 가입여부
 - 갑판장, 펌프실, 조타실, 기관실 등 선박설비의 작동상태, 이상유무 확인 등으로 되어 있음

이상과 같은 항만청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정유업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회주의 책임에 대한 의견

- (1)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선박운송사업자 및 당해 선박의 선장에게 있는것이며.
- (2) 선박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해야할 제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감독하는 것은 항만청의 고유업무임.
 - 선박운송사업자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해상화물 운송사업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야 할 사항임.
- (3) 다만 회주는 당해화물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운송사업자에게 법규의 준수, 적정선원 시설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나.
- (4) 선박운송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정유사가 항만시설의 이용제한 등 민생필수품인 석유류제품의 국내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제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함.

3. 출항전 안전점검관련 회주책임점검에 대한 의견

- (1) 법정 승선인원의 승선여부 확인점검의 형식성

출항전 법정선원의 승선여부를 확인하더라도, 점검 후 중도하선할 경우 회주가 이를 Check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주의 책임하에 법정선원 승선여부

를 확인하는 것은 형식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항만청 등 정부기관의 불시점검등을 통해 선원 미승선시 선장/선원 면허취소, 해상화물운송 사업 면허취소 등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임.

(2)보험관련사항의 확인책임관련

보험관련사항은 기 항만청에서 적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선박운항 사업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있는 사항으로, 항차마다 출항전 점검에 포함할 필요성이 없음.

(3)선박의 감항능력과 관련된 시설 확인책임 관련

선박의 운항가능여부 판단은 최종적으로 선장이 하는 것이고 운항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선장이 책임져야함.

점검표중 시설 점검사항은 출항전 뿐만 아니라 운항중에도 선장의 책임하에 계속 주의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점검의 일관성,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도 선장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회주의 책임하에 안전관리자에 의한 안전점검을 별도로 수행할 경우.

- 선장 및 선박운항사업자의 안전의식 약화
 - 점검시간 소요에 따른 체선, 체화로 부두 효율성 저하 및
 - 이로 인한 부두 혼잡도 심화에 따른 항만내 선박 충돌사고의 위험 등
- 오히려 사고위험이 증대할 소지마저 있음.

실제로 대부분의 유조선 안전사고는 설비상의 하자보다는 선원부주의등 인재에 의한 것이며, 선박의 감항능력이 일순간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1-3일 단위로 매항차마다 시설점검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기점검시 상세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4. 정유업계의 건의사항

이상과 같이 출항전 안전점검을 회주의 책임하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 수행하는 것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선장·선원의 안전의식 약화
- 체선으로 인한 부두혼잡으로 항만내 사고위험 증가 등

또다른 위험요인을 안고 있음.

반면에 업무량은 유조선 안전관리업무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과다하여 단순·반복업무에 고급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선원구득난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현실에서 다수의 유자격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임. 따라서,

- (1) 선박의 출항전 안전점검은 선장 이하 선원의 책임하에 안전점검이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점검표를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고 회주는 이를 확인토록 하며,
- (2) 회주는 정기적인 선박 안전진단업무, 선원 교육업무 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선박 안전진단시 문제가 된 선박은 문제 해결시까지 용선을 중단하며, 해난사고 다발선박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로써 선박운송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킴.

즉 정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래 영세선사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항만청에서 추진중인 안전관리업무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과도 극대화될 것임.[끝]